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유보목록

한국의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않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10.2조(내국민 대우)
 - 2) 제10.3조(최혜국 대우)
 - 3)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0.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이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다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0.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0.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0-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부록 III-1은 양 당사국이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7. 제8.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0.5조제1항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3.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한국은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0.9조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0.9조제1항다호는 제10.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0.4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²

¹ 예를 들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0.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0.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보험업법 제91조 및 제100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의 수,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 판매비율,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그리고 대출의 대가로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 관행과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함을 밝힌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0.5조)
조치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9055호, 2022. 11. 15.)</p> <p>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2호, 2019. 1. 15)</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2021. 6. 15.)</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8818호, 2022. 2. 3.)</p> <p>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814호, 2022. 2. 3.)</p> <p>선원법(법률 제19415호, 2023. 5. 16.)</p> <p>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p> <p>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8683호, 2022. 1. 4.)</p> <p>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7894호, 2021. 1. 12.)</p> <p>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p> <p>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p> <p>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7051호, 2020. 2. 18.)</p> <p>항공사업법(법률 제18565호, 2021. 12. 7.)</p> <p>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 2023. 1. 3.)</p>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8호, 2022. 6.10.)</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 12. 7.)</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p> <p>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8933호, 2022. 6. 10.)</p> <p>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8143호, 2021. 4. 20.)</p> <p>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8945호, 2022. 6. 10.)</p> <p>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p> <p>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9453호, 2023. 6. 13.)</p>

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자서명법(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변호사법(법률 제17828호, 2021. 1.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 6. 9.)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 2019. 4. 30.)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인회계사법(법률 제18114호, 2021. 4. 20.)
관광진흥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궤도운송법(법률 제18185호, 2021. 5. 18.)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1, 2023. 7. 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9호, 2022. 1. 21.)
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우주순회배상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3호, 2012. 2.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4호, 2023. 1.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7호, 2023. 1. 17.)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해운법(법률 제19415호, 2023. 5.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57호, 2023. 1. 3.)

유보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에 기재되지 않은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p>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법률 제18573호, 2021. 12. 7.)</p> <p>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p> <p>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및 제8조의2(법률 제19211호, 2022. 12. 31.)</p> <p>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별표(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p> <p>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별표(법률 제17294호, 2020. 5. 19.)</p>
유보내용	<p>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³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p> <p>2. 투명성을 목적으로,</p> <p>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p>

³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나. 자연인은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 라. 다호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지분의 3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은행법 제58조(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10(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4, 제11조 및 별표(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7호, 2023. 7. 5.)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에서의 각 지점의 설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73조, 제379조 및 제386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한국거래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혜가를 받은 그 밖의 대체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및
제294조부터 제323조까지(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결제기관으로서 또는 한국의 예탁자 계정 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 제323조의3, 제323조의10 및 제378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중앙청산기구만이 증권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서비스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0.5조)
조치	<p>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p> <p>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대통령령 제33542호, 2023. 6. 13.)</p>
유보내용	<p>일반투자자(일부 전문투자자⁴ 포함)가 외화로 표시된 증권 및 외국 증권시장 또는 외국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한국에서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해야 한다.</p>

⁴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6호, 2023. 7. 4.)의 기관투자가는 제외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은행법 제62조 및 제63조(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은행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33542호, 2023. 6. 13.)

유보내용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국내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여겨진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p>신용협동조합법 제7조(법률 제18714호, 2022. 1. 4.)</p> <p>상호저축은행법 제7조(법률 제19564호, 2023. 7. 18.)</p> <p>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법률 제19260호, 2023. 3. 21.)</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법률 제17799호, 2020. 12. 29.)</p> <p>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18244호, 2021. 6. 15.)</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제258조, 제263조 및 제355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p>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o). 채권평가회사

11. 분야	금융서비스
행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률 제17354호, 2020. 6. 9.)
유보내용	한국에서 일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p>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8682호, 2022. 1. 4.)</p> <p>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p> <p>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8574호, 2021. 12. 7.)</p> <p>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085호, 2022. 12. 13.)</p> <p>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135호, 2022. 12. 27.)</p>
유보내용	<p>한국은</p> <p>가. 다음의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주택금융공사 4) 농협은행, 그리고 5) 수산업협동조합 <p>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p>

-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 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4)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13. 분야	금융서비스
행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유보내용	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2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0.5조)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 내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에 기재되지 않은 “강제적인” 제3자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할 때,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 서비스도 고려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들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그 기관들의 의무 및 책임의 계속적 보증 또는 한시적 추가 보증을 포함하여, 그 기관들의 정부 보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p>한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1) 공모 시점에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2) 공모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종의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에콰도르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한다.</p>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8조)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8574호, 2021. 12. 7.)

주택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유보내용

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부록 III-1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는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10.4조와 불합치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 (1) 한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 (2)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및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 (3) 한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 (4)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 (5)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6)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7) 한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8) 금융기관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법」 제38조, 「보험업법」 제105조)
- (9) 한국의 비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및 제7-36조부터 제7-39조까지)
- (10) 한국은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 밖의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은행법」 제30조,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다음의 조치는 제10.10조제1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10.2조(내국민 대우)는 한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음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 또한 제10.10조제1항의 범위 내에 해당될 것이다.

- (1)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여겨질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업법」 제9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 (2) 외국보험사의 한국 내 지점은 한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한국 영역 내에

보유야 한다. (「보험업법」 제7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5조의2)